

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3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주민이 직접 시장에게 신청해야하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및 확인, 소하천점용 권리의무승계 및 기간연장을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

2. 주요내용

-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및 확인 : 읍면동장에 위임
- 소하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, 소하천점용 기간연장 : 읍면장에 위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(1) 입법예고 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완료

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
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 령
		읍면장	동장	
1	○ 과세증명원 발급 (시에서 병행 처리)	○	○	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
2	○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(시에서 병행처리)	○	○	지방세법 제38조제2항
3	○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	○	○	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5호
4	○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	○	○	충주시 시세조례 제6조
5	○ 지방세 체납독촉장 교부	○	○	충주시 시세조례 제6조
6	○ 영달예산범위 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불명령	○	○	지방재정법 제49조
7	○ 영달예산범위 안의 건물건설공사 집행	○	○	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
8	○ 불용품 매각 처리	○	○	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
9	○ 공(시)유 재산 대부분료 (변상금) 부과 징수	○	-	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
10	○ 의료급여증 재사용 (단,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의료급여대상자 제외)	○	○	의료급여법 제8조
11	○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(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의료급여대상자 제외)	○	○	의료급여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
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 령
		읍면장	동장	
12	<삭제>			
13	○ 매장 증명	○	○	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
14	○ 개장 신고	○	○	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
15	○ 공설묘지 사용허가 (주덕읍장에 한함)	○	-	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
16	○ 매장 신고	○	○	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
17	○ 공중 화장실 관리	○	○	충주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
18	○ 개인하수처리시설 (정화조) 청소 지도	○	-	충주시 하수도 조례 제23조
19	○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(오수처리시설, 정화조) 설치(변경) 신고 및 준공검사	○	○	충주시 하수도 조례 제34조 건축법 제14조 및 제22조
20	○ 생활폐기물 수집, 운반 처리	○	-	폐기물관리법 제13조
21	○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(시에서도 병행 처리)	○	○	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 령
		읍면장	동장	
22	○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[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한함(연번 제23-27호까지)]	○	-	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16조
23	○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승계 등	○	-	도로법 시행규칙 제3조
24	○ 건축신고 시 도로 일시점용 허가	○	-	도로법 제38조제1항
25	○ 도로점용허가기간의 연장 허가	○	-	도로법 제38조제1항
26	○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	○	-	도로법 제41조
27	○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	○	-	도로법 제49조제3항
28	○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. 신고 수리 및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(수수료 징수 포함) 가. 가로형 간판 나. 세로형 간판 다. 돌출 간판 라. 지주이용 간판 마. 창문이용 광고물 바. 전기이용 광고물	○	-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, 제9조
29	○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(수수료 징수 포함)	○	-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, 제39조
30	○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. 정비명령 나. 현장정비	○	-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
31	○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	○	-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 령
		읍면장	동장	
	표시의 취소 (제28호 가~바목과 같음)			제13조
32	○ 농지전용신고	○	-	농지법 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
33	<삭 제>			
34	○ 불법농지전용예방 및 농지사후 관리	○	-	농지법 제34조, 제35조, 제39조,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
35	○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	-	○	농지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
36	○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	-	○	농지법 제50조제1항
37	○ 자경증명 발급	-	○	농지법 제50조제2항
38	○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(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)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	○	○	자동차관리법 제48조, 제77조제8항
39	○ 이륜자동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	○	○	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, 제77조제8항
40	○ 건축신고의 수리	○	○	건축법 제14조
41	○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	○	○	건축법 제20조제2항
42	○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	○	○	건축법 제83조
43	○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(시에서도 병행처리)	○	-	건축법 제7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
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 령
		읍면장	동장	
44	○ 개인급수전 설치 승인 및 공사의 시행	○	-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, 제9조
45	○ 상수도 업무 관련 민원 처리	○	-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3조
46	○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위반자에 대한 정수처분 (단, 조례 제43조제1항 제1호 중 수도요금으로 인한 정수처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통보는 제외)	○	-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
47	○ 가구분할 적용신고	○	○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
48	○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	○	○	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
49	○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	○	○	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
50	○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	○	○	자동차관리법 제26조, 제77조제8항
51	○ 소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	○	-	소하천정비법 제22조,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
52	○ 충주시 농민문화체육 센터 관리(주덕읍장에 한함)	○	-	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
53	○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및 확인	○	○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
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 령
		읍면장	동장	
54	○ 소하천점용 권리·의무의 승계	○	-	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
55	○ 소하천점용 기간연장	○	-	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

관계법령

▣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▣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제22조(건축물의 철거·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·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개정 2009.1.20, 2011.9.16, 2012.11.16>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·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, 철거·멸실 등의 사유 및 철거·멸실 등 전·후 사진(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)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20>
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·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

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20, 2011.9.16>

④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■ 소하천정비법

제4조의2(권리·의무의 승계 등)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·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·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.

1. 상속인
2. 양수인
3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

제2조의2(권리·의무 승계의 신고)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·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인·양수인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·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승계 대상인 권리·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
2. 권리·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(권리·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3.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
제11조(점용허가기간 등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소하천구역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

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점용·사용 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